

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3. 5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정사유

- 2002. 1. 1부터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내 지목이 “대지” 토지의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으며, 2003. 1. 1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47조규정에 의거 매수청구 신청시 보상금지급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

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영
- 재원의 조성
 -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
 -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~15%수준
 -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
 -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
- 용도
 -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
 -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

3. 관계법령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
-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 지목이 “대” 인 토지의 매수청구권부여 (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 , 영 제41조)
-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상금 지급 및 토지매수
-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3천만원이상은 채권으로 지급가능 (상환기간 10년)

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47조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제1조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(이하 “대지보상 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

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.

제3조(자원)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

1.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
2.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~15%해당액
3.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
4.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
5.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

제4조(용도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.

1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 제1항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(지장물철거 보상금 포함) 및 부대경비
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
3.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·관리를 위한 경비

제5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)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6조(준용)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로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